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4. 8. 2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계획취지 : 도시관리계획(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2. 위 치 : 서구 검암동 666-3, -6번지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
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
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●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	변 경				
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수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분할가능 획 지수
	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1	101	2,526.9	1	923.0	4	101	2,526.9	1	923.0	4
			2	707.9	-			2	707.9	-
			3	896.0	5			3-1	631.3	4
								3-2	264.7	-

●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101	3 → 3-1, 3-2	획지분할	지적과 획지간의 일치

☐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☐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